

집합투자규약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투자신탁(주식)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규약
3. 정정사유:
 -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인하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9 조(보수)	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인하	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모든 클래스 <u>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분의 7.35</u>	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모든 클래스 <u>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분의 6.50</u>